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을 “사업내용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자(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을 5년 이상 운용(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조합의 운용기간을 합산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제4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를 “자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하거나 그 투자에 따른 증권을”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지분”을 “증권(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8.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받은”을 “사전에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6.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의 주식 교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10조 중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체 투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투자금액의 합계로 산정할 것.

제15조제2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해당 창업기획자의 자본금(법 제24조제2항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을 의미한다)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

- 나. 해당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금액 중 그 창업기획자의 출자비율만큼 산정한 금액

제1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를 “자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하거나 그 투자에 따른 증권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행위”를 “행위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1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10.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창업기획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란 제16조제2호라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를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해당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자에 대한 경영지배일 것
- 2)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초기창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 3)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초기창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3. 해당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4. 해당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의 주식 교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을 “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3년”으로,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인수”를 “등이 인수”로 한다.

제2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를 “자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하거나 그 투자에 따른 증권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행위”를 “행위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25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10.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제1호나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2호라목”을 “제25조제2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4.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5.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의 주식 교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중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한 경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출자금을 현물로 출자하려는 경우 현물에 대한 출자금 및 출자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용할 것

제34조제2호 중 “금액”을 “금액 또는 출자 1좌당 대응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으로, “자”를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1인으로 산정할 것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를 “자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하거나 그 투자에 따른 증권을”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지분”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제37조제1호가목 중 “받은”을 “사전에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7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4.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의 주식 교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38조 중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한다.

제4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위탁하는”을 “위탁 또는 승인하는”으로 한다.

5.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제47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3. 제45조에 따른 개인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자료 제출 요청

제48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자료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48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위탁받”을 “위임 또는 위탁받”으로 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연계채권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소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 소유 및 매입이 금지되는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7호를 삭제한다.

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1호를 삭제한다.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⑥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⑦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0호를 삭제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⑧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⑪ 전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2. (생략) <신설>	-----. 1. ----- 3퍼센트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자(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을 5년 이상 운용(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조합의 운용기간을 합산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제4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u> 소유하는 행위 가. ~ 다. (생략)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u>주식 또는 지분</u>을 매입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1. (현행과 같음) 2. ----- ---- 자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하거나 그 투자에 따른 증권을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3. ----- ----- ----- ----- ----- 증권(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

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 4) (생략) <신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1. ----- 사전에 받은 -----
4. ~ 7. (생략) <신설>	4. ~ 7. (현행과 같음) 8.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 4. (생략) <신설> <신설>	2.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6.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의 주식 교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생략)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 ----- ----- -----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 ----- ---.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 ③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④ <u>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u>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 -----.
1. 전체 투자금액은 창업기획자의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로 산정할 것. 다만, 창업기획자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투자금액의 합계로 산정할 것. ----- ----- ----- ----- ----- ----- -----.
<신설>	가. 해당 창업기획자의 자본금(법 제24조제2항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신설>	<u>재산을 의미한다)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u> 나. 해당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금액 중 그 창업기획자의 출자비율만큼 산정한 금액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u> 소유하는 행위	2. ----- ----- <u>자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하거나 그 투자에 따른 증권을</u>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u>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라.·마. (생략)	<u>만.·바.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u>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9.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9. ----- -----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신 설> 10. (생 략)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조 제2호라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	----- 행위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10.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창업기획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 경우”란 ----- ----- ----- ----- 1. 제16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가.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	---	---	---	--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
주회사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
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
창업자에 대한 경영지배
일 것

2)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
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
유함으로써 창업기획자
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
지 해당 초기창업자의 주
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3)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
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
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
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
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
창업자에 대한 경영지배
일 것

나.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
월(주식이나 지분을 보
유함으로써 창업기획자
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
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초기창
업자의 주식이나 지분
을 보유할 것

다.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
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

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초기
창업자의 주식이나 지분
을 전부 매각할 것

<삭 제>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
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초기창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제24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을 인수(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인수할 당시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제24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3년 --- 개인 등이 인수할----- ----- ---
<신설>	3. 해당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신설>	4. 해당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의 주식 교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25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
① 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 ----- 감사인----- ----- ----- ---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주식	1. (현행과 같음) 2. ----- ----- 자에 법 제2조제1호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른 투자를 하거나 그 투자
가. ~ 다. (생략)	에 따른 증권을 -----
<신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마. (생략)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만.·바. (현행 라목 및 마목
	과 같음)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	9. -----
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
있는 행위	-- 행위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설>	10.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
	무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인
	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
	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하여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2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제2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

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25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1. -----
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	-----
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경우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나. -----
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	-----
원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	-----
는 경우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생략)	3) (현행 2)와 같음)
다. 제25조제2호라목에 따른	다. 제25조제2호마목-----
계열회사의 지분 또는 주	-----
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경우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본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
점이 위치한 부동산[연면적 1	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제 8조제1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 산을 말한다)으로 직접 사용 하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 은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 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결 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 는 경우 4.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 우 5.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의 주식 교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31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①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 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32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했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 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했을 것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	제31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① ----- ----- ----- 「공인회계사법」 제23 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 법인”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한 경우를 ---. <삭 제> <삭 제>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
--	--	--	--

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략) <신설>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출자금을 현물로 출자하려는 경우 현물에 대한 출자금 및 출자비율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용할 것 2. ----- 금액 또는 출자 1좌당 대응되는 자산의 평가액 ----- 3. ----- -----. -----. 가. ----- ----- -----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 14제2항-----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는 제외한다)는 -- -	나.·다. (생략) <신설>	나.·다. (현행과 같음) 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1인으로 산정할 것 4.·5. (현행과 같음)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기 회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u> 소유하는 행위	2. ----- ---- <u>자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하거나 그 투자에 따른 증권을</u>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u>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u>주식 또는 지분</u> 을 매입하는 행위	3. ----- ----- ----- ----- ----- <u>증권</u>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바.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u>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신설>	<u>6) 신기술사업투자조합</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신설>	<u>8.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인</u>

	<u>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1. 제3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 -----
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 <u>사전</u> <u>에 받은</u> -----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u>3.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u>
<신설>	<u>4.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u>

	<u>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의 주식 교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u>
3.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u>회계법인의 감사의견</u> 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u>감사인</u> ----- ----- -----.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u>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u>위탁하는</u> 사업	6. ----- -- <u>위탁 또는 승인하는</u> ----- -----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생략)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서류 등을 말한다.	②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권한의 위탁 등) <u><신 설></u>	제48조(권한의 위탁 등) ①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u>
	1. <u>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 등록</u>
	2. <u>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 등록</u>
	3. <u>제45조에 따른 개인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u>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② -----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자에 위탁한다.	----- ----- ----
1.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삭 제>
2. ~ 12.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
<신설>	13.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자료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④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 7. (생략)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제5항----- ----- 위임 또는 위탁받-----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연락처	(044) 204 - 7711